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부속기관의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부속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하 부속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부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설립신청) 부속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임교원 10인 이상의 공동발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과 사유
2. 설립될 부속기관의 운영규정
3. 부속기관의 조직표
4. 사업계획서 (최소 향후 3년간)
5. 재원조달 계획서

제4조 (설립승인) 부속기관의 설립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제5조 (임직원) ①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속기관의 부서장은 부속기관장이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③ 부속기관의 임직원은 산학협력단이 모집·선발하되 해당 부속기관장이 선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

④ 부속기관 임직원의 고용주는 부속기관장이 되며,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⑤ 부속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⑥ 기타 임직원들의 임기는 해당 부속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속기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속기관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부속기관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 및 기능은 해당 부속기관 운영규정에 의거한다.

제7조 (회계 연도) 산하 부속기관의 회계연도는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8조 (재정) 각 산하 부속기관은 자체운영 수익금 및 각 단체의 보조금, 기타 관련 수익금과 본 대학의 대응자금 등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한다.

제9조 (납부의무) 각 산하 부속기관은 매년 일정 금액의 간접비를 납부해야 하며, 간접비는 운영수익금 중 5%로 한다.

제10조 (예산심의) ① 산하 부속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년도 예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서는 예산서를 검토 후 조정의견을 부속기관에 통보하고, 부속기관에서는 부속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보고) 산하 부속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운영자금 현황, 연구 및 사업실적을 포함하는 부속기관 운영보고서를 산학협력단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결과의 활용) ① 산하 부속기관은 매년마다 본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연차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하 부속기관의 연차실적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자료와 절차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 (해산 및 전환운영) ① 총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 부속기관을 통합·폐합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② 산하 부속기관의 해산 시 부속기관의 보유자산은 산학협력단과의 합의 하에 본 대학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산을 산하의 타 부속기관에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4조 (부속기관 운영규정의 개정) 부속기관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